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2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6.
3. 회부연월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접수된 신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

현행	개정안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7조에 따른 <u>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u>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u>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u>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대한 <u>관한 사항</u> ③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공단</u>-----.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¹⁾을 위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자²⁾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³⁾할 수 있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부시행세칙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신고포상제도 운영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0조(기타사항) ① (생략)

② 발행자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에 규정해야 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규)

제2조(신고포상제도) ① 공단은 운영요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내용(증거자료 등)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4.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에서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5.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이 그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6.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7.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6에 따른 환급금액 비율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경우
9. 개별가맹점이 가맹점이 아닌 곳에 물품대금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③ ~ ⑦ (생략)

제3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신고포상제도 운영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신고포상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각호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대한 관한 사항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
중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행해진 건에 관련된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개
최⁴⁾되었음.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
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관련 절차가 안정적·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누리상품

4) 동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3년에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행해진 건
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2024년 12월 12일에 개최되었으며, 신고자 2인에게 총 400만원의 포
상금을 지급하였음.

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용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70조의2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려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71조제2항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의 법정화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